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전형 전까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리대학 지원 시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입 학 처]

【 차 례 】

1.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요약.....	1
2. 모집인원.....	2
3. 수시모집.....	7
1) 학생부교과(해람교과)	7
2) 학생부교과(지역교과)	7
3) 학생부교과(지역교과저소득)	8
4) 학생부교과(기회균형)	9
5) 학생부종합(해람인재)	10
6) 학생부종합(지역인재)	11
7)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저소득)	12
8) 학생부종합(농어촌)	13
9) 학생부종합(특성화고)	14
10) 학생부종합(저소득)	15
11)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	16
12) 실기(일반)	16
13) 실기(체육특기자)	17
4. 정시모집.....	18
1) 수능(일반)	18
2) 수능(지역인재)	18
3) 수능(지역인재저소득)	19
4) 실기(일반)	19
5) 수능(농어촌, 특성화고, 저소득)	20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21
6. 학생부 종합평가 항목 및 배점.....	26
7.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28
8. 실기고사.....	30
9. 동점자 처리기준.....	31
10.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32

구분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정원 내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해람교과	일반학과: 학생부교과 100% 치의예과: 학생부교과 100%			치의예과만 적용
					지역교과				
					지역교과 저소득				
					기회균형				
			학생부 종합	해람인재	일반학과: 학생부(서류평가) 100% 치의예과: 학생부(서류평가) 80% + 면접평가 20%				
				지역인재					
				지역인재 저소득					
			실기 위주	실기	일 반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실기 100%	없음	
						체육학과	학생부 30% + 실기 70%		
	체육특기자	체육학과			학생부 30%(교과 21%, 출결 9%) + 실기 25% + 실적 45%				
	정시	⑦군 ⑧군 ⑨군	수능 위주	수능	일 반	일반학과: 수학능력시험성적 100% 치의예과: 수학능력시험성적 100%			없음
일 반									
일 반									
지역인재									
지역인재 저소득									
실기 위주			실기	일 반	음악학과: 실기 100%				
정원 외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종합	농어촌	일반학과: 서류평가 100% 치의예과: 서류평가 80% + 면접평가 20%			치의예과만 적용
					특성화고				
					저소득				
					특수교육대상				
	정시		수능 위주	수능	농어촌	일반학과: 수학능력시험성적 100% 치의예과: 수학능력시험성적 100%			치의예과만 적용
					특성화고				
					저소득				

※ 학교폭력조치사항은 모든 전형에서 감점으로 반영하며, p25의 반영방법 참조

□ 모집시기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구분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2026학년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비고		
					모집인원(명)	모집비율(%)	모집인원(명)	모집비율(%)	모집인원(명)	모집비율(%)			
정원내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해람교과	689	40.7	682	40.3	681	40.2			
				지역교과	166	9.8	173	10.2	148	8.7			
				지역교과 저소득	1	0.1					신설		
				기회균형	92	5.4	90	5.3	94	5.6			
			학생부 종합	해람인재	435	25.7	439	26.0	464	27.4			
				지역인재	126	7.4	115	6.8	106	6.3			
				지역인재 저소득	2	0.1	3	0.2	3	0.2			
			실기 위주	실기	일 반	75	4.4	85	5.0	92	5.4		
		체육특기자			4	0.2	5	0.3	4	0.2			
	소 계					1,590	93.8	1,592	94.0	1,592	93.9		
	정시	ⓐ군 ⓑ군	수능 위주	수능	일 반								
					일 반	2	0.1	2	0.1	2	0.1		
					일 반	100	5.9	100	6.0	101	6.0		
		ⓒ군	실기 위주	실기	실 기	3	0.2						
	소 계					105	6.2	102	6.0	103	6.1		
	정원내 합계					1,695	100	1,694	100	1,695	100		
정원외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종합	농어촌	44	2.6	44	2.6	44	2.6	4% 이내	입학 정원 5.5% 이내	
				특성화고	21	1.2	15	0.9	15	0.9	1.5% 이내		
				저소득	27	1.7	33	2.0	33	2.0	-		
				특수교육대상	5	-	5	-	5	-	제한없음		
	정원외 합계					97	5.5	97	5.5	97	5.5		
	수시모집					1,687	94.1	1,689	94.3	1,689	94.3		
	정시모집					105	5.9	102	5.7	103	5.7		
총 계					1,792	100	1,791	100	1,792	100			

※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1,792명 기준으로 산정(2024학년도 미충원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 정원 내·외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해당 모집‘군’으로 이월하여 선발

□ 수시모집 인원

대학	모집 단위	모집인원																	
		입학 정원	정원내										정원외				합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		소계	학생부종합			소계			
			해람 교과	지역 교과	지역 교과 저소득	기회 균형	해람 인재	지역 인재	지역 인재 저소득	실기	체육 특기 자		농어 촌	특성 고	저 소득			특수 교육 대상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9	11	6		2	8					27	6		5	◎	11	157	
	영어영문학과	32	16			2	6	6				30				◎			
	중어중문학과	26	13	5		2	6					26				◎			
	일본학과	26	8			2	10	4				24				◎			
	철학과	22	9			2	5	4				20				◎			
	사학과	21	9			2	5	3				19				◎			
	소 계	156	66	11		12	40	17				146	6		5		11	157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30	16			2	5	5				28	9	4	6	◎	19	290	
	회계학과	34	16			2	9	5				32							◎
	관광경영학과	43	26			2	6	7				41							◎
	경제학과	23	6			2	9	4				21							◎
	무역학과	27	13			2	6	4				25							◎
	국제통상학과	36	10	5		2	12	5				34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5	14	6		2	11					33							◎
	법학과	28	10			2	12	4				28							◎
	자치행정학과	31	14			2	8	5				29							◎
	소 계	287	125	11		18	78	39				271	9	4	6		19	290	
자연과학대학	수학물리학부 [수학전공/물리·에너지전공]	29	12	5		2	8					27	5		4	◎	9	136	
	데이터사이언스학과	23	11	3		2	5					21				◎			
	생물학과	22	8	5		2	4	3				22				◎			
	대기환경과학과	28	14	4		2	6					26				◎			
	화학신소재학과	33	14	7		2	8					31				◎			
	소 계	135	59	24		10	31	3				127	5		4		9	136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31	14	6		2	7					29	7	1	4	◎	14	226	
	해양바이오식품학과 [해양바이오전공/해양식품융합전공]	53	25	5		2	13	5				50				◎			
	해양생태환경학과	30	14	5		2	9					30				◎			
	수산생명의학과	26	12	4		2	6					24				◎			
	해양생명과학과	24	11	4		2	5					22				◎			
	식물생명과학과	30	14	5		2	8					29				◎			
	환경조경학과	30	14			2	7	5				28				2			◎
	소 계	224	104	29		14	55	10				212	7	3	4		14	226	

대학	모집 단위	모집인원																
		입학 정원	정원내									정원의외					합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		소 계	학생부종합					소 계
			해람 교과	지역 교과	지역 교과 저소득	기회 균형	해람 인재	지역 인재	지역 인재 저소득	실기	체육 특기 자		농어 촌	특성 화고	저 소득	특수 교육 대상		
공과대학	전자·반도체공학부 [전자공학전공/반도체공학전공]	80	40	7		2	20	7				76		2		⊙	12	203
	신소재·생명화학공학부 [세라믹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금속공학전공/생명화학공학전공]	85	46	17		2	15					80	5		3	⊙		
	건설환경공학과	37	20	8		2	5					35		2		⊙		
	소 계	202	106	32		6	40	7				191	5	4	3		12	203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디자인학과 (미술, 도자디자인, 섬유디자인)	50	12			2	5			31		50						131
	체육학과	38								34	4	38						
	음악학과 (피아노, 관현악)	21	4			2				10		16						
	패션디자인학과	27	7	5		2	6	7				27						
	소 계	136	23	5		6	11	7		75	4	131						131
치과대학	치의예과	40		9	1	2	12					24	2				2	57
	치위생학과	30	5	8		2	9	6				30	1				1	
	소 계	70	5	17	1	4	21	6				54	3				3	57
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	60	18	5		2	27	5				57						189
	간호학과	75	30	6		2	27	4	2			71			1		1	
	사회복지학과	32	12	4		2	12					30	1			⊙	1	
	다문화학과	30	10	5		2	11					28	1			⊙	1	
	소 계	197	70	20		8	77	9	2			186	2		1		3	189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73	34	5		2	23	6				70	7	10	4	⊙	21	293
	멀티미디어공학과	34	15	6		2	9					32				⊙		
	기계공학과	59	28	6		2	17	3				56				⊙		
	자동차공학과	30	14			2	7	5				28				⊙		
	전기공학과	32	15			2	8	5				30				⊙		
	정보통신공학과	28	13			2	7	4				26				⊙		
	산업경영공학과	32	12			2	11	5				30				⊙		
	소 계	288	131	17		14	82	28				272	7	10	4		21	293
해당 모집단위																5	5	5
합 계		1,695	689	166	1	92	435	126	2	75	4	1,590	44	21	27	5	97	1,687

- ※ 수시 정원 내 전형의 미충원 인원은 정시 정원 내 전형의 해당 모집단위 인원내 이월하여 선발
 ※ 수시 정원외 전형(특수교육대상 제외)의 미충원 인원은 정시 정원외 전형(㉠군)으로 이월하여 선발
 ※ 수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한 경우 초과 인원만큼 정시 모집인원에서 감하여 선발
 ※ 수시 정원의 특수교육대상 전형 인원 '◎' 표기는 선발 학과를 의미
 ※ 지역교과저소득 전형은 치의예과만, 지역인재저소득 전형은 간호학과만 해당
 ※ 수시 정원의 전형 중 모집인원이 단과대학별로 표시된 통합선발의 경우 단과대학별 전체 지원자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농어촌 10%, 특성화고 10%, 저소득 20%, 특수교육대상 제한없음)을 초과할 수 없음
 ※ 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모집단위 명칭 및 모집인원은 변경 될 수 있음

□ 정시모집 인원

대학	모집 단위	모집인원										
		정원 내							정원 외			
		수능일반			지역인재		실기	소계	수능일반			소계
		가군	나군	다군	일반 (다군)	저소득 (다군)	다군		농어촌 (다군)	특성학교 (다군)	저소득 (다군)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				2+★	★			★
	영어영문학과			2+★				2+★				★
	중어중문학과	★						★			★	선발하지 않음
	일본학과			2+★				2+★				★
	철학과			2+★				2+★				★
	사학과			2+★				2+★				★
	소 계	★		10+★				10+★	★		★	★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2+★				2+★	★	★		★
	회계학과		2+★					2+★				선발하지 않음
	관광경영학과			2+★				2+★				★
	경제학과			2+★				2+★				★
	무역학과			2+★				2+★			★	★
	국제통상학과			2+★				2+★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				2+★				★
	법학과			★				★				★
	자치행정학과			2+★				2+★				★
	소 계		2+★	14+★				16+★	★	★	★	★
자연과학대학	수학물리학부 [수학전공/물리·에너지전공]			2+★				2+★	★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2+★				2+★			★	★
	생물학과			★				★			★	★
	대기환경과학과			2+★				2+★				★
	화학신소재학과			2+★				2+★				★
	소 계			8+★				8+★	★		★	★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				2+★	★	★		★
	해양바이오식품학과 [해양바이오전공/해양식품융합전공]			3+★				3+★				★
	해양생태환경학과			★				★				★
	수산생명의학과			2+★				2+★			★	★
	해양생명과학과			2+★				2+★				★
	식물생명과학과			1+★				1+★				★
	환경조경학과			2+★				2+★		★		★
	소 계			12+★				12+★	★	★	★	★

대학	모집 단위	모집인원											
		정원 내							정원 외				
		수능일반			지역인재		실기	소계	수능일반			소계	
		가군	나군	다군	일반 (다군)	저소득 (다군)	다군		농어촌 (다군)	특성학교 (다군)	저소득 (다군)		
공과대학	전자·반도체공학부 [전자공학전공/반도체공학전공]			4+★				4+★	★	★	★	★	
	신소재·생명화학공학부 [세라믹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금속공학전공/생명화학공학전공]			5+★				5+★		★		★	★
	건설환경공학과			2+★				2+★		★		★	★
	소 계			11+★				11+★	★	★	★	★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디자인학과 (미술, 도자디자인, 섬유디자인)	★						★					
	체육학과	★						★					
	음악학과 (피아노, 관현악)			2+★			3+★	5+★					
	패션디자인학과			★				★					
	소 계	★		2+★			3+★	5+★					
치과대학	치의예과			16+★	★	★		16+★	★			★	
	치위생학과			★				★	★			★	
	소 계			16+★	★	★		16+★	★			★	
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			3+★				3+★					
	간호학과			4+★				4+★			★	★	
	사회복지학과			2+★				2+★	★			★	
	다문화학과			2+★				2+★	★			★	
	소 계			11+★				11+★	★		★	★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3+★				3+★	★	★	★	★
멀티미디어공학과				2+★				2+★	★				
기계공학과				3+★				3+★	★				
자동차공학과				2+★				2+★	★				
전기공학과				2+★				2+★	★				
정보통신공학과				2+★				2+★	★				
산업경영공학과				2+★				2+★	★				
소 계				16+★				16+★	★	★	★	★	
합 계		★	2+★	100+★	★	★	3+★	105+★	★	★	★	★	

※ 정시 모집 '군' 인원의 '★' 표기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이월 시 선발

※ 수시모집 음악학과 해람교과 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수능일반 모집으로, 실기 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실기 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 수시모집 치의예과 지역교과 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지역인재 모집으로, 지역교과저소득 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지역인재저소득 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3

수시모집

1. 학생부교과(해람교과)

가. 모집인원: 689명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합계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2. 학생부교과(지역교과)

가. 모집인원: 166명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입학일부터 졸업(예정)일까지 강원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합계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치의예과 외 미적용(치의예과: 6등급)

3. 학생부교과(지역교과저소득)

가. 모집인원: 1명(치의예과)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과 ②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입학일부터 졸업(예정)일까지 강원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②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따른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합계
치의예과	일괄합산	100	100 (1,0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8등급(치의예과)

4. 학생부교과(기회균형)

가. 모집인원: 92명

나.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저소득층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농어촌 학생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유형 Ⅰ> 또는 <유형 Ⅱ>에 해당하는 자 <유형 Ⅰ>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일기간 동안 학생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Ⅱ>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하며,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검정고시 출신자, 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 ※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보아 자격을 부여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원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부모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고,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일 또는 사망일 이후부터 지원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입양일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함
국가보훈 대상자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서해5도 학생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자립지원 대상자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해당자
북한이탈 주민이나 제3국출생 북한이탈 주민자녀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만학도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26년 3월 1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만학도)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합계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치의예과 외 미적용(치의예과: 6등급)

5. 학생부종합(해람인재)

가. 모집인원: 435명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 (서류평가)	면접평가	합계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0)	-	100 (1,000)
치의예과	1단계	500	100 (800)		100 (800)
	2단계	100	80 (800)	20 (2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치의예과 외 미적용(치의예과: 6등급)

6. 학생부종합(지역인재)

가. 모집인원: 126명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입학일부터 졸업(예정)일까지 강원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 (서류평가)	면접평가	합계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0)	-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7.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저소득)

가. 모집인원: 2명(간호학과)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과 ②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입학일부터 졸업(예정)일까지 강원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②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따른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 (서류평가)	면접평가	합계
간호학과	일괄합산	100	100 (1,000)	-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8. 학생부종합(농어촌) - 정원 외

가. 모집인원: 44명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유형 I> 또는 <유형 II>에 해당하는 자

<유형 I>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일기간 동안 학생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II>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하며,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 검정고시출신자, 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
- ※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보아 자격을 부여
-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원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부모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고,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일 또는 사망일 이후부터 지원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 ※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입양일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함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 (서류평가)	면접평가	합계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0)	-	100 (1,000)
치의예과	1단계	500	100 (800)		100 (800)
	2단계	100	80 (800)	20 (2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치의예과 외 미적용(치의예과: 6등급)

9. 학생부종합(특성화고) - 정원 외

가. 모집인원: 21명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 및 특성화고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대학이 지정한 지원가능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동일계열 인정 고교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 ② 고교의 기준학과가 대학의 기준학과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 (서류평가)	합계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10. 학생부종합(저소득) - 정원 외

가. 모집인원: 27명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 (서류평가)	합계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11.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 - 정원 외

가. 모집인원: 5명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 (서류평가)	합계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12. 실기(일반)

가. 모집인원: 75명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실기고사	합계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일괄합산	100	-	100 (1,000)	100 (1,000)
체육학과	일괄합산	100	30 (300)	70 (7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13. 실기(체육특기자)

가. 모집인원: 4명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근 3년 이내(고1~고3 실적만 인정)에 협회 주관 전국대회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학생부			실기고사	입상실적	합계
			교과	출결	학교폭력 조치사항			
체육학과	일괄합산	100	21 (210)	9 (90)	감점반영*	25 (250)	45 (45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 학교폭력조치사항 반영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중 학교폭력조치사항 반영방법(p25) 참조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4

정시모집

1. 수능(일반) - 가, 나, 다군

가. 모집인원: 102명 + 수시모집 이월 인원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수능	합계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2. 수능(지역인재) - 다군(치의예과)

가. 모집인원: 수시모집 이월 인원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입학일부터 졸업(예정)일까지 강원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수능	합계
치의예과	일괄합산	100	100 (1,0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3. 수능(지역인재저소득) - 다군(치의예과)

가. 모집인원: 수시모집 이월 인원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과 ②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① 입학일부터 졸업(예정)일까지 강원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②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따른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수능	합계
치의예과	일괄합산	100	100 (1,0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4. 실기(일반)

가. 모집인원: 3명 + 수시모집 이월 인원

나. 지원자격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실기고사	합계
음악학과	일괄합산	100	100 (1,0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5. 수능(농어촌, 특성화고, 저소득) - 다군(정원 외)

가. 모집인원: 수시모집 이월 인원

나.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농어촌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유형 Ⅰ> 또는 <유형 Ⅱ>에 해당하는 자 <유형 Ⅰ>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일기간 동안 학생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Ⅱ>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하며,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검정고시출신자, 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 ※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보아 자격을 부여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원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부모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고,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일 또는 사망일 이후부터 지원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입양일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결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함
특성화고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 및 특성화고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이 지정한 지원가능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동일계열 인정 고교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② 고교의 기준학과가 대학의 기준학과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저소득	2026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단위	선발방법	선발비율 (%)	반영비율	
			수능	합계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 (1,000)	100 (1,000)

※ ()안은 반영점수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치의예과 외 미적용(치의예과: 6등급)

1. 학생부 요소별 반영 비율 및 반영 점수

전형명		모집단위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 비율 (실질 반영 비율)			반영 점수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비교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교과	비교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교과	해람교과 지역교과 자율교과 기회균형	해당 모집단위	100			100 (100)	-	감점 반영	1,000	-	감점 반영
학생부 종합	해람인재 지역인재 자율인재 농어촌 특성화고 저소득 특수교육대상	해당 모집단위				100 (100)	1,000				
	실기	일반				치의예과			100 (80)	800	
체육학과						-			-		
체육특기자		체육학과				100 (100)			-		
						70 (21)	30 (9)		210	90	
수능	수능	해당 모집단위	해당없음			-		-			

※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함

※ 체육특기자의 비교과 반영항목은 출결

※ 학교폭력조치사항은 모든 전형에서 감점으로 반영하며, p25의 반영방법 참조

2. 교과 성적 반영 방법

가. 반영교과

- ※ 일반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의 공통 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
- ※ 사회: 역사, 윤리, 도덕, 한국사 포함
- ※ 교과목별 성적이 평균, 표준편차와 함께 성취도로 표시되는 일반교과의 경우는 표준 점수에 따른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며, 그 밖의 이수/미이수(·, P/F 등)로 표시되는 교과는 반영하지 않음
- ※ 진로선택교과는 가산점으로 반영: 취득점수의 3%(‘A’ 3개 이상), 취득점수의 2%(‘A’ 2개)

<일반학과>

교과구분	교과(군)	반영과목	반영요소
일반교과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 우수 3과목	석차등급(1~9) · 이수단위
	사회, 과학	교과별 우수 2과목	

※ 등급이 동일한 과목의 경우 이수단위(학점)가 높은 과목을 반영

<치의예과>

교과구분	교과(군)	반영과목	반영요소
일반교과	국어, 수학, 영어	전과목	석차등급(1~9) · 이수단위
	사회, 과학	전과목	

나. 교과성적 산출

1) 산출식

- ※ 총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영
- ※ 점수 배점 : 최고점 1,000점, 최저점 600점
-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일반학과>

$$\text{점수 산출 방법(총점)} : \frac{\square(\text{석차등급점수} \times \text{이수단위(학점)})}{\square(\text{이수단위(학점)})} \times 10$$

- ※ 부족한 교과는 9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하며, 국어, 영어, 수학은 4단위(학점), 사회, 과학은 3단위(학점)로 적용
- ※ 학생이 이수한 일반교과의 단위(학점) 합이 100단위(학점) 이상인 경우 가중치 부여

교과구분	이수단위 적용 교과(군)	총 이수단위(학점)	가중치
일반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100 미만	1.00
		100 이상	1.05

<치의예과>

$$\text{점수 산출 방법(총점)} : \frac{\square(\text{석차등급점수} \times \text{이수단위(학점)})}{\square(\text{이수단위(학점)})} \times 10$$

- ※ 학생이 이수한 반영과목의 단위(학점)수 합이 70단위(학점) 미만인 경우 부족한 단위(학점)수는 석차등급 9등급(60점)을 적용하여 반영

2) 석차등급에 따른 점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석차백분율(R)	$0 < R \leq 4$	$4 < R \leq 11$	$11 < R \leq 23$	$23 < R \leq 40$	$40 < R \leq 60$	$60 < R \leq 77$	$77 < R \leq 89$	$89 < R \leq 96$	$96 < R \leq 100$
점 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3) 표준점수에 따른 환산등급 및 점수

표준점수(Z)	1.76 이상	1.75~1.23	1.22~0.74	0.73~0.26	0.25~-0.25	-0.26~-0.73	-0.74~-1.22	-1.23~-1.75	-1.76 이하
환산등급	1	2	3	4	5	6	7	8	9
석차백분율(R)	$0 < R \leq 4$	$4 < R \leq 11$	$11 < R \leq 23$	$23 < R \leq 40$	$40 < R \leq 60$	$60 < R \leq 77$	$77 < R \leq 89$	$89 < R \leq 96$	$96 < R \leq 100$
점 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표준점수(Z) = [(과목점수)-(평균)]/(표준편차)

4) 교과성적 처리 예외 기준

□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로서 과목별 석차가 표기된 경우

과목별 석차백분율	4%이하	4%초과 ~ 11%이하	11%초과 ~ 23%이하	23%초과 ~ 40%이하	40%초과 ~ 60%이하	60%초과 ~ 77%이하	77%초과 ~ 89%이하	89%초과 ~ 96%이하	96%초과 ~ 100%이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반영과목 : 이수한 전 과목 반영(성적이 없는 과목 제외)

※ 과목별 석차백분율=[{과목별 석차+(동석차 인원수-1)/2}÷재적수]×100

□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로서 평어만 표기된 경우

평어	수	우	미	양	가
석차등급	3	5	6	8	9
점수	90	80	75	65	60

※ 반영과목 : 이수한 전 과목 반영(성적이 없는 과목 제외)

□ 검정고시 성적 반영 방법

검정고시 성적	100점	99~95점	94~90점	89~85점	84~80점	79~75점	75점 미만
석차등급	3	4	5	6	7	8	9
점수	90	85	80	75	70	65	60

※ 반영과목: 검정고시 필수과목 반영

※ 과목별 단위수: 국어·수학·영어 교과목의 단위수는 각 3단위, 그외 교과목의 단위수는 각 2단위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 국외고 성적 반영 방법

5등급	6등급	8등급	11, 12, 13 등급	백분위	석차등급	환산점수
4.0 Excellent		4.0(7) Very Superior	A ⁺	97이상	1	100
	A		A, A ⁻	96~90	2	95
3.0 Good/Merit(M)		3.5(6) Superior	B ⁺	89~87	3	90
	B	3.0(5) High Average /Above Average	B, B ⁻	86~80	4	85
2.0 Satisfactory(S) /Achieves(A)		2.5(4) Average	C ⁺	79~77	5	80
	C	2.0(3) Low Average	C, C ⁻	76~70	6	75
1.0 Needs Improvement /Development		1.5(2) Conditional Pass	D ⁺	69~67	7	70
	D	1.0(1) Poor	D, D ⁻	66~60	8	65
0.0 Failure/Unsatisfactory /Beginning	E, F	0.0(N) Withdrawal /Incomplete	E, F	60미만	9	60

- ※ 반영과목 : 이수한 전 과목 반영(성적이 없는 과목 제외)
- ※ 과목별 단위수 : 단위수가 없는 경우 1단위 적용
- ※ 학기와 년 단위 점수 함께 표시: 년 단위 점수 적용
- ※ 정규학기(1학기, 2학기)만 반영(계절학기 제외)
- ※ 국내고 학생부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학기 일반교과 전 이수과목을 반영하며, 등급 및 성취도 성적 반영 방법 적용
-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3. 체육특기자 출결 반영방법

무단(사고) 결석일 수	0일	3일 이내	6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상
등급	1	2	3	4	5
반영점수	90점	75점	60점	45점	0점

※ 결석일수 = 무단결석일수 + (무단에 의한 지각·조퇴·결과일 수의 합÷ 3) *소수점 이하 절사

4. 학교폭력조치사항 반영방법: 모든 전형에 감점으로 반영

관련 법 해당 호*	1, 2, 3호	4, 5호	6, 7호	8호	9호
기록 삭제 시기	졸업과 동시	졸업일로부터 2년후 (십의 시 졸업과 동시)		졸업일로부터 2년후	삭제대상 아님
감점	감점없음	전형 총점**의 3%	전형 총점**의 4%	전형 총점**의 6%	전형 총점**의 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 모든 전형(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 수능) 총점: 1,000점

※ 검정고시출신자, 국외고 등 학교폭력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검정고시, 국외고 출신자 등 중에서도 국내 고등학교 재학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고, 학교폭력조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형 총점(1,000점)에서 감점으로 반영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적용)

※ 위 각 호의 사항이 중첩되어 적용되는 경우는 감점이 큰 1개 조치사항만 반영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1. 서류평가

가. 대상 전형: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학생부종합전형

나. 전형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이 정한 대체서식 등
(※ 자기소개서 미제출)

다. 평가 항목 및 평가내용(반영비율)

평가항목	인재상	평가내용	반영비율
진로역량	창(□):창의도전	☐ 미래의 꿈을 향한 열정으로 끝없이 배우고 도전하여 성취하는 인재 ☐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을 중심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도전 정신, 진로탐색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 반영	40%
공동체역량	통(□):소통협력	☐ 소통하여 공감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지닌 인재 ☐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과 출결상황을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과 협업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 반영	25%
학업역량	기(□):자기주도	☐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인재 ☐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중심으로 학업의지와 태도, 자기 주도성과 자기관리 능력, 추세적 발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 반영	35%

2. 면접평가

가. 대상 전형: 치의예과의 모든 학생부종합전형

나. 면접 방법

- 1) 면접 방식: 면접위원 2인 대 수험생 1인의 개별(블라인드) 면접
- 2) 면접 형식: 수험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서류 확인 면접
- 3) 면접 시간: 수험생 1인당 10분 내외

다. 평가 항목 및 평가내용(반영비율)

평가항목	평가내용	반영비율
발전가능성	☐ 구체적인 목표의식과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하는 인재 ☐ 학교교육과정과 학교활동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취경험이 있는 인재	25%
인성	☐ 공동체 의식과 공감능력 등 사회요구역량을 갖춘 인재 ☐ 배려·나눔·협력·갈등관리 능력 등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인재	30%
전공관심도	☐ 모집단위에 대한 열정과 관심,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 ☐ 관심분야에 대한 잠재력과 기초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	45%

1. 수능 성적 반영 방법

가. 수능 영역별 반영과목 및 반영비율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수능 반영 비율 (%)	수능 성적 활용 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 1		사회	과학	직업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과학기술대학	모든 모집단위	100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반영점수)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높은 점수 3과목 평균						미반영
생명과학대학	해당 모집단위 (수산생명의학과 제외)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보건복지대학	해당 모집단위 (간호학과 제외)									
생명과학대학	수산생명의학과	100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반영점수)	국어, 수학(가산점포함), 영어, 탐구1과목(가산점포함) 중 높은 점수 3과목 평균						미반영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100	백분위 (영어, 한국어는 등급별 반영점수)	20	25	20		30 (2과목 평균)		5

※ 치의예과: 과학탐구(물리학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 2과목 평균 반영

나. 영어 성적 반영 방법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5	90	85	77.5	70	62.5	55	40

다. 한국사 성적 반영 방법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100	100	100	100	90	80	70	60

라. 수능 가산점 부여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가산점
생명과학대학	수산생명의학과	○수학 :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취득 백분위의 10% 가산점 ○과학탐구 : 취득 백분위의 5% 가산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 탐구영역 반영 시 가산점 부여 후 우수과목으로 1과목 반영

2. 수능최저학력기준

가. 대상 모집단위: 치의예과 * 4개 영역 중 3개영역(수학 필수) 합산 등급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합산등급 (이내)	반영영역
수시	학생부 교과	지역교과	6	· 국어(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 1) · 수학(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 영어 · 탐구(우수 1과목)
		지역교과 저소득	8	
		기회균형	6	
	학생부 종합	해람인재	6	· 국어(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 1) · 수학(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 영어 · 과학탐구(우수 1과목)
		농어촌	6	
정시	수능	농어촌	6	

모집 시기	모집단위(분야)		유형 및 과제
수시	조형예술· 디자인학과	미술	☐ 수묵담채, 수채화, 인물소조, 기초디자인 중 택1
		도자디자인 섬유디자인	☐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중 택1
	체육학과		① 10m 왕복달리기 ② 제자리 멀리뛰기 ③ 윗몸 일으키기
	음악학과	피아노	☐ 자유곡 1곡(단, Sonata일 경우 빠른 악장이어야 함)
		관현악	☐ 자유곡 1곡 ※ 타악기의 경우 스네어드럼, 마림바(또는 실로폰), 팀파니 모두를 연주해야 하며, 개인 악기는 지참 불가
정시	음악학과	피아노	☐ 자유곡 1곡(단, Sonata일 경우 빠른 악장이어야 함)
		관현악	☐ 자유곡 1곡 ※ 타악기의 경우 스네어드럼, 마림바(또는 실로폰), 팀파니 모두를 연주해야 하며, 개인 악기는 지참 불가

모집시기	전형유형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 기준 (순위)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인문, 사회과학, 예술체육, 보건복지(간호학과 제외)		☐ 1순위: 학생부교과 반영성적 합산점수 우수자(가중치 포함) ☐ 2순위: 국어교과 반영성적 우수자 ☐ 3순위: 영어교과 반영성적 우수자 ☐ 4순위: 수학교과 반영성적 우수자 ☐ 5순위: 사회교과 반영성적 우수자 ☐ 6순위: 반영교과 이수단위 합계 상위자 ☐ 7순위: 일반교과 총 이수단위 합계 상위자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과, 치과, 과학기술, 간호학과		☐ 1순위: 학생부교과 반영성적 합산점수 우수자(가중치 포함) ☐ 2순위: 수학교과 반영성적 우수자 ☐ 3순위: 영어교과 반영성적 우수자 ☐ 4순위: 국어교과 반영성적 우수자 ☐ 5순위: 과학교과 반영성적 우수자 ☐ 6순위: 반영교과 이수단위 합계 상위자(치의예과는 5순위 까지) ☐ 7순위: 일반교과 총 이수단위 합계 상위자
	학생부 종합	전 모집단위 (치의예과 제외)		☐ 1순위: 서류평가 요소 중 '진로역량' 점수 우수자 ☐ 2순위: 서류평가 요소 중 '학업역량' 점수 우수자
		치의예과		☐ 1순위: 면접점수 우수자 ☐ 2순위: 1단계(서류평가) 점수 우수자 ☐ 3순위: 수학(수능/등급) 성적 우수자 ☐ 4순위: 국어(수능/등급) 성적 우수자 ☐ 5순위: 과학(수능/등급/우수 1과목) 성적 우수자
	실기위주	예술체육 (체육특기자 제외)		☐ 1순위: 실기점수 우수자 ☐ 2순위: 교과 성적 우수자
		체육특기자		☐ 1순위: 대회 비중도 상위등급 입상 실적 우수자 ☐ 2순위: 최근년도 입상 실적 우수자 ☐ 3순위: 교과 성적 우수자
정시모집	수능위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모든 모집단위	☐ 1순위: 수능 국어영역 반영성적 우수자 ☐ 2순위: 수능 영어영역 반영성적 우수자 ☐ 3순위: 수능 탐구영역 반영성적 우수자
		보건복지대학	해당 모집단위 (간호학과 제외)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과학기술대학	모든 모집단위	
		생명과학대학	해당 모집단위 (수산생명의학과 제외)	☐ 1순위: 수능 수학교과 반영성적 우수자 ☐ 2순위: 수능 영어영역 반영성적 우수자 ☐ 3순위: 수능 탐구영역 반영성적 우수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생명과학대학	수산생명의학과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 1순위: 수능 영어영역 반영성적 합산점수 우수자(가산점 포함) ☐ 2순위: 수능 영어영역 반영성적 우수자(가산점포함) ☐ 3순위: 수능 영어영역 반영성적 우수자 ☐ 4순위: 수능 탐구영역 반영성적 우수자(가산점포함)
		치과대학	치의예과	
				☐ 1순위: 수능 수학교과 반영성적 우수자 ☐ 2순위: 수능 영어영역 반영성적 우수자 ☐ 3순위: 수능 국어영역 반영성적 우수자 ☐ 4순위: 수능 탐구영역 반영성적 우수자 ☐ 5순위: 수능 탐구영역 1영역 성적 우수자 ☐ 6순위: 수능 탐구영역 2영역 성적 우수자 ※ 탐구영역은 지원자 선택과목 중 높은 성적순으로 1,2 배정 ☐ 7순위: 수능 한국사 등급 우수자
	실기위주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	☐ 1순위: 실기점수 우수자 ☐ 2순위: 교과 성적 우수자

가. 모집인원: 입학정원 제한없이 모집(치과대학,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

나. 관련법령

법령구분	대상자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2항 제6호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다. 지원자격

자격구분	지원자격	비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또는 본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과정 4급 이상 수료

라. 전형방법

모집단위	서류전형	비 고
전 모집단위 (치과대학,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	100%	※ 국내 고등학교 재학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제출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형 총점(1,000점)에서 감점으로 반영(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적용)